

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설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0월 6일,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제5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9.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은수 복지환경국장)

가. 상정 이유

종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 제정 목적 (안 제1조)
- 2) 적용대상 (안 제3조)
- 3)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·구성 (안 제4조)
- 4) 생활임금의 결정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 생략 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5. 토 론 요 지 : 이미자 위원 수정안 동의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수정 동의안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“하수급인”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,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. 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근로자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근로자로 한다. ② (생략)	제2조(정의) (조례안과 같음) 1. ~ 2. (조례안과 같음) 3. <u>(삭제)</u> 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 한다. ② (조례안과 같음)